信用狀條件과의 一致에 관한 考察 및 解決을 위한 提案

洪 鍾 德*

Ⅰ. 背 景
Ⅱ. 支給의 前提條件
Ⅲ. 條件一致의 對象
Ⅳ. 條件一致의 基準
Ⅴ. 條件一致의 判斷基準이 相異하여 發生한 紛爭의 例
Ⅵ. 實務次元에서의 防禦手段
Ⅶ. 根本的인 解決策의 提案

Ⅰ. 背 景

1995년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수출입거래를 대금결재의 방식으로 분류하면 수출입 총액의 약 60% 정도가 신용장방식으로 결재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수출입거래는 송금 또는 추심결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재의 비중이 80%~90% 에 달하던 1970~1980년대와 비교하여 신용장방식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신용장방식으로의 결재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通信과 交通의 급격한 발달로 계약당사자인 매매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져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관한 의구심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둘째, 우리 나라의 수출입구조가 소액 輕工業製品에서 대형 重工業製品으로 변화하면서 연불수출 등에 따라 제품을 담보로 한 다른 방식의 與信供與가 증가하고 있다.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부지점장.

셋째, 해외에 소재하는 지사 또는 합작회사 사이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송금 또는 추심방식으로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거래는 매매당사자 사이에 신용에 관한 의구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나 제 3 자인 금융기관과 장기간에 걸친 협의를 거쳐 거래마다 개별적인 금융제공의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인 비율에 있어 신용장방식으로의 거래가 감소한다고 할지라도 금액 면에서의 절대적인 비중 그리고 신용장거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매매당사자 사이에 신용에 관한 의구심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경우, 中立的 입장에서 양측을 모두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定型化되어 있는 유일한 次善의 代案은 아직까지 신용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中立的 입장에 있는 당사자란 은행들이다. 定型化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숙지하면서 적용하는 "신용장통일규칙"(UCP)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규칙(Rule)이 있어 여기에 준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합의가 간단하고 신용에 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아니한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세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해질수록 또한 거래당사자들의 지능이 발달하여 각종 불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수록 신용장 거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신용장 거래를 실무적으로 위축시키는 최대의 장애요인은 은행들이 지급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란 條件과의 一致인데 그 일치의 여부를 판단해 주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ICC의 자료에 의하면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는 20 % 도 안되며 최초의 은행에 의하여 일차적인 검토를 마친 경우에도 50 % 이상의 서류들은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Ⅱ. 支給의 前提條件

신용장에서 개설은행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支給確約文言(Engagement Clause)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We hereby engage with drawer and/or bona fide holders that drafts drawn under and negotia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ured on presentation and that drafts accepted within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ured at maturity(우리 개설은행은 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어 발행되고 매입된 환어음이 제시되거나 이 신용장의 기간 이내에 인수된 환어음이 만기일에 정히 지급될 것을 환어음 발행인 그리고/또는 善意의 所持人에게 약속합니다).

즉,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일람지급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시키고 자신에게 제시하면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또한 수익자가 연지급 환어음을 발행하면 자신이 인수하였다가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의 약속에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 …)에 지급한다는 약속이다.

최근의 신용장들에서는 상기와 같은 표준문언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은 이미 UCP 500의 조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UCP 500을 준거규칙으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문구만 삽입하면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UCP 500 제 2 조에서는 유형에 따른 신용장의 정의를 명문화시켜 놓고 있는데 참고로 지급신용장의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mean any arrangement … whereby … Issuing Bank acting at the request and on the instructions of Applicant … is to make payment to … Beneficiary … against stipulated documents, provide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re complied with(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이 일치하면 명기된 서류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지급을 이행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역시 신용장에서 지급의 전제조건은 신용장의 조건이 일치하면(provide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re complied with)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UCP 500 제 9 조 a 항은 取消不能信用狀에서의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참고로 매입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의 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 Irrevocable Credit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 the Issuing Bank an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Credit are complied with : if the Credit provides for negotiation - to pay without recourse to drawers and/or bona fide holders, Drafts drawn by the Beneficiary … (취소불능신용장이란 명시된 서류가 개설은행으로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 신용장이 매입을 규정하고 있다면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발행인 및/또는 선의의 소지인들에게 求償權을 행사함이 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확약을 성립한다).

여기서도 지급의 전제조건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지급한다"(provided that …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Credit are complied with)라고 규정하고 있다.

Ⅲ. 條件一致의 對象

그러면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첫째, 信用狀의 條件만 감안한다.

UCP 500 제 3 조 a 항은 "Credits … are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s … contract … on which they may be based … "라고 하여 신용장은 관련 계약들과 독립된 別個의 去來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書類만 검토한다.

UCP 500 제 4 조는 " … all parties …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라고 하여 상품의 실체와는 상관없는 서류만을 가지고 거래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 모든 條件은 書類로서 요구한다.

UCP 500 제 5 조 b 항은 "… Credit … must state precisely the document(s) against which … negotiation is to be made."라고 하여 신용장은 그것으로 매입이 이행되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 13 조 c 항에서는 "If a Credit contains without stating the documents …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라고 하여 서류의 요구가 없는 조건은 無效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Ⅳ. 條件一致의 基準

그러면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은행들은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된 서류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과 不一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첫째, 신용장의 요구조건과 不一致하는 경우.

둘째, 서류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연관성이 없는 경우(UCP 500 제 13 조 a 항).

UCP 500 제 13 조 a 항 첫째 문단에서는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들이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은행들은 이러한 서류들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Reasonable Care', 즉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they appear, on their face', 즉 문면상으로 보아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은행들이 신용장 거래에서 제시된 서류를 검토할 때 기울여야 하는 합리적인 주의와 어디까지 검토하는 것이 문면상의 일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서류검토의 원칙에 대하여 ICC는 Pub. 511 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Reasonable Care :

현재 'reasonable care'에 대한 개념은 'strict compliance'의 원칙과 함께 서로 다른 법률체계 또는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각국의 법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험있는 은행원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서류 상호간 그리고 서류와 신용장에 있는 단어와 단어, 문자와 문자가 일치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strict compliance'와 'reasonable care'를 "거울과 같이 같아야 한다."라는 개념에 집착한 법정들은 서류검토의 표준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한편 strict compliance를 "개설의뢰인에게 명백한 손실을 유발시키지 않는 한도의 오류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정들 또는 "그 법정이 스스로 설정한 合理性, 公正性 또는 信義誠實의 原則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의 오류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정들도 또한 서류검토의 표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법정들의 판결은 사건별 분석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분석들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한 표준으로 삼을 수가 없었다. Strict compliance를 적용하여 사용해야 하는 서류검토의 표준이 없음으로 인하여 신용장거래에서의 분쟁을 확산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신용장거래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신용장이란 경쟁력이 있고 상호 협조적인 노력을 수반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객과 거래은행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관행을 개발해야 한다. 융통성이 없고 정직하지 않고 또는 성실하지 못한 관행은 항상 短命에 그치며 훌륭한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즉 國際標準銀行慣行이 될 수 없다. 신용장거래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이란 정직하고 예측가능한 관행이 반영된 규칙을 말한다.

Appear On Their Face :

이 문언의 의미는 "서류들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서류 상호간에 연관성(consistency)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제 3 자의 理解(understanding)가 아니고 전적으로 그 서류를 검토하는 은행의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신용장거래에서는 은행들 특유의 서류검토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서류상에 특정의 확인문언(statement, certificate) 및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한편 'on their face'의 의미를 서류의 뒷면(reverse)에 대한 앞면(face)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Ⅴ. 條件一致의 判斷基準이 相異하여 發生한 紛爭의 例

첫째, *Tosco Corp. vs. FDIC* 사건

신용장에서 환어음은 "drawn under Bank of Clarksville Letter of Credit Number 105"라는 문언을 명기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는 "drawn under Bank of Clarksville, Clarksville, Tennessee letter of Credit No. 105"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개설은행은 'letter'의 'l'이 대문자 L이 아니고 소문자이며, 'No.'가 신용장에 명기된 'Number'가 아닌 약어로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정에서의 소송에서 개설은행의 부도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에 따라 수익자는 대금을 무사히 지급받았다.

둘째, *Beyene vs. Irving Trust Co.* 사건

신용장은 B/L의 Notify Party를 'Mohammed Sofan'으로 표시하라고 하였는데 수익자가 제시한 B/L에는 Notify Party가 'Mohammed Soran'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정에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Sofan은 상품의 도착이 통지되어질 사람인데 잘못된 철자는 상품수취를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셋째, 우리 나라의 M상사와 F은행 및 홍콩의 J은행 사이의 분쟁

우리 나라의 M상사는 반도체를 수출하기로 하는 신용장을 받았는데 상품의 명세가 'Model : SP-I95'로 되어 있었다. M상사는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란에 'Model : SP-195'라고 작성하여 F은행에 제시하였고 F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하였다.

서류를 받은 개설은행인 홍콩의 J은행은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Ⅵ. 實務次元에서의 防禦手段

첫째, 信用狀의 受取時 철저한 點檢

예를 들어, ① UCP를 준거규칙으로 한다는 문언의 삽입여부, ② IRREVOCABLE 문언의 존재여부, ③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의 유무, ④ 선하증권 원본의 행선지, ⑤ 선하증권의 수화인, ⑥ 항공운송장의 수화인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조건변경을 받아야 한다.

둘째, 開設銀行의 信用度를 點檢

우리 나라의 수출입 업체들은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검토하는 작업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관행으로 국제적인 신용도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지 않은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確認信用狀에 의한 安全裝置

개설은행의 신용이나 수입상 또는 개설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確認信用狀을 요구하여 받는다. 확인은행은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지급, 인수 또는 구상권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입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넷째, Without Recourse 買入約定에 의한 安全裝置

개설은행의 인수 전 또는 인수 후에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 조건의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을 받는 경우 매입은행의 매입대전 지불은 최종적이다.

다섯째, 포페이팅 회사의 아발에 의한 安全裝置

은행들은 연지급 기간이 장기간(대개 1년 이상)인 경우 인수를 주저하기 때문에 포페이팅회사에게 無求償權附買入을 시키면 안전하다.

여섯째, 償還條件에 따른 安全裝置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매입은행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수익자로부

터 매입대금을 返還받은 경우 수익자가 개설은행을 상대로 지급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또한 수익자 마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求償權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매입에 대한 상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수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수익자와 합의에 따라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매입은행이 상환대금을 받은 후 개설은행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이해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상환조건을 요구하여 관철시킨다. 그러나 매매협상에서의 主導權을 어느 쪽이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환조건의 방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書類作成 및 檢討能力의 提高

수출입업체들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技法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업체로부터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들은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계 및 은행들은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신용장의 이론 및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수출입업체는 각 은행의 서류점검에 대한 능력에 따라 거래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역관련 공익기관에서 각 은행의 서류검토 능력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은행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Ⅶ. 根本的인 解決策의 提案

신용장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주고 그 판결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적인 機構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ICC 주관 하에 각 은행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즉 國際標準銀行慣行을 책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그러나 아무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고 하

여도 실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쉽게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대안으로서 ICC의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仲裁機構를 두고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만을 전담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용되어 신용장을 더욱 완벽한 국제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信用狀 去來의 專門家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국의 소송 사건에서 신용장거래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법관으로서 사건을 맡는 경우 판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률지식과 함께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專門家들로 구성된 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判決이 迅速해야 한다.

상대방이 분명히 불합리한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서의 판결을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소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셋째, 費用이 低廉해야 한다.

少額의 신용장거래인 경우 訟事에 따르는 과중한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이길 수 있는 사건을 포기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끝내는 비영리 기구가 되어야 한다.

넷째, 判決을 受容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공정한 판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수긍하지 않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신용장거래에서 분쟁의 당사자들은 대개 은행들이다. 은행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信用이다.

만일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은행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전 세계의 각 은행에 公示하는 등, 그러한 은행의 신용상태에 타격을 주고 다른 은행들로 하여금 그 은행이 관련되는 신용장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일부 은행들의 불합리한 관행이 불식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기구가 되어야 한다.